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5-30

서 울 고 등 법 원

제 3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1누55755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redacted], [redacted]
피고, 피항소인	[redacted]시장
제 1 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21. 7. 22. 선고 2020구합15067 판결
변 론 종 결	2022. 2. 10.
판 결 선 고	2022. 3. 3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9. 5. 원고에게 한 재산세 1,995,688,730원의 부과처분 및 지방교육세 399,137,74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5-30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제1심판결문 해당 부분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5면 5 내지 11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 제13조 제5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3항 제9호를 비롯한 관련 법령 규정들의 입법 취지, 문언 표현과 규정 내용 및 실질과세의 원칙과 현황부과의 원칙 등을 종합하면,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실제로 회원제 골프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이어야 한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두11904 판결의 취지 참조).」

○ 6면 1행부터 7면 1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① 회원제 골프장은 그 회원이 일반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 반하여, 대중골프장은 도착순서나 예약 여부 및 그 순서에 따라 시설 이용 권리가 주어진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그런데 원고는 2019. 5. 25. 운영위원회에서 2019. 5. 31.부터 이 사건 골프장 남코스를 대중제로 운영하기로 결의하였고, 2019. 7. 21. 인터넷 사이트에 대중골프장 승인에 관한 공지를 게시하였으며, 2019. 8. 1.에 이르러서야 비회원들의 이 사건 골프장 남코스 이용에 관한 예약시스템을 변경하였다. 이러한 사실에 골프가 4명 정도의 인원이 모여서 몇 시간 동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5-30

안 함께 하는 운동이어서 일반적으로 상당한 기간을 앞두고 미리 예약을 시도하는 점까지 고려할 때 운영위원회에서 2019. 5. 25. 대중제로 전환하기로 한 결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 기존 회원들에 의하여 2019. 5. 31.자 이용 예약은 완료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새로이 비회원들이 2019. 5. 31. 이용을 하기 위한 예약을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일반적으로 비회원들은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하여 골프장 이용 예약을 하는 점, 위와 같은 운영위원회의 결의만으로 일반 비회원들에게 위와 같은 대중제 전환 사실이 충분히 알려졌을 것이라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비회원들이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준일 당시 기존의 회원들과 실질적인 차별 없이 이 사건 골프장 남코스를 이용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원고는 2019. 5. 31.경부터 이 사건 골프장 남코스에 관하여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조성되는 회원제골프장 입장료에 대한 특별소비세, 교육세, 농특세 및 체육진흥기금 등의 부가금을 징수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대중제로 운영하였다고 주장한다. 갑 제5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9. 5. 31.부터 이 사건 골프장 남코스에 관하여 체육진흥기금 및 특별소비세 등의 부가금을 징수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9. 5. 31.부터 비회원들이 실질적으로 예약을 하여 이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가 위 부가금을 징수하지 않은 이유가 2019. 5. 31.부터 비회원에 대해서도 차별 없이 이 사건 골프장 남코스의 이용 기회를 제공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정식으로 비회원의 이용을 허용하기 전(예약시스템을 변경하였다는 2019. 8. 1.)까지 잠정적으로 기존 회원에 대하여 대중골프장 이용 조건으로 이 사건 골프장 남코스의 이용을 허용하였기 때문인지 분명치 않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이 사건 골프장 남코스가 실제로 대중골프장으로 운영하였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5-30

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골프장의 남코스에 관하여 2019. 5. 한 달 동안의 비회원 이용객 비율이 58%이고, 2019. 6. 한 달 동안의 비회원 이용객 비율이 59%이므로 과세기준일인 2019. 6. 1. 당시 이미 실질적으로 대중골프장으로 사용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2022. 2. 9.자 준비서면). 그러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019. 5. 25.경 비로소 이 사건 골프장 남코스를 대중제로 전환하기로 결의하였고 2019. 5. 31.부터 대중제로 운영되었다는 것인바, 2019. 5. 거의 대부분 기간 회원제로 운영되었으므로 같은 기간 이 사건 골프장의 남코스를 이용한 비회원은 이용 예약을 한 회원과 함께 이를 이용하였을 것으로 보일 뿐, 독자적으로 예약을 하거나 도착순서에 의하여 이를 이용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2019. 5. 한 달 동안의 이 사건 골프장의 남코스 이용객 중 비회원 이용객 비율이 58%라는 사정만으로 그 당시 이 사건 골프장 남코스가 실질적으로 대중제로 운영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2019. 6. 한 달 동안의 이 사건 골프장의 남코스 이용객 중 비회원 비율 역시 2019. 5.과 거의 유사한 59%로 이 사건 골프장 남코스가 회원제로 운영되던 시기에 비해 비회원 이용비율에 거의 변동이 없어, 이를 근거로 이 사건 골프장 남코스가 실질적으로 대중제로 운영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5-30

재판장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